##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44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강득구·김병주·박홍배

송재봉 • 이강일 • 전재수

정혜경 • 윤후덕 • 이용우

채현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있다.
- ⑦ 제4항에 따른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의 기간·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9
	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
	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
	<u>할 수 있다.</u>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제4항에 따른 일시적 비공
	개 전환 및 자료 보존의 기간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